

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8월 2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9. 4) 상정

○ 제1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9. 9. 4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과장 김 창 열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8423호, 2007. 5. 1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는 한편,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제명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함.
-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.(안 제1조)
 - 제133조 → 제142조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input type="radio"/> 특이사항 없음.	<input type="radio"/> 특이사항 없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42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“소규모유통업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소규모유통업”이란”으로 하고, “200제곱미터이하”를 “200제곱미터 이하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단”을 “다만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6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6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금의 범위안에서”를 “기금의 범위에서”로 하며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제9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9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제8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8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 규정의”를 “제1항의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8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퍼센트 내지 3퍼센트”를 “2퍼센트부터 3퍼센트까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3년이내”를 “3년 이내”

로 하고, “1회에 한하여 6개월간”을 “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동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관한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하고, “시금고간의”를 “시금고 간의”로 하며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연도중”을 “연도 중”으로 하고, “기금의 범위안에서”를 “기금의 범위에서”로 하며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다음 각호의 1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유통업업무담당주사를”을 “유통업업무담당을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47호
의결 년월일	2009. 9. 8. (제154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8. 21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8423호, 2007. 5. 1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는 한편,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제명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함.
- 나.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.(안 제1조)
 - 제133조 → 제142조

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42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“소규모유통업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소규모유통업”이란”으로 하고, “200제곱미터이하”를 “200제곱미터 이하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단”을 “다만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6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6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금의 범위안에서”를 “기금의 범위에서”로 하며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제9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9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제8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8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 규정의”를 “제1항의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8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퍼센트 내지 3퍼센트”를 “2퍼센트부터 3퍼센트까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3년이내”를 “3년 이내”로 하고, “1회에 한하여 6개월간”을 “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동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관한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하고, “시금고간의”를 “시금고 간의”로 하며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연도중”을 “연도 중”으로 하고, “기금의 범위안에서”를 “기금의 범위에서”로 하며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다음 각호의 1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유통업업무담당주사를”을 “유통업업무담당을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도 2억원, 5차년도 3억원을 출연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출연액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 다만, ----- -----.</p>
<p>제5조 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기금은 「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한다.</p> <p>②시금고에서는 조성된 기금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규모유통업사업자(이하 "유통업사업자"라 한다)에게 융자한다.</p>	<p>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----- ----- -----제6조에 따라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기금의 범위에서 ----- 따라 ----- -----.</p>
<p>제7조 (기금의 용도) ① (생략)</p> <p>②기금의 융자를 받은 유통업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융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기타 사업장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</p>	<p>제7조(기금의 용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----- 경우에만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그 ----- 밖에 ----- -----</p>
<p>제10조 (융자대상자 선정) 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따라 융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금고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융자대상자 선정) ① ----- -----제9조에 따른 -----제8조에 따른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②제1항 규정의 대상자 선정에 따른 용자심의를 위하여 부천시 용자심의회를 둔다.</p>	<p>② 제1항의----- ----- -----</p>
<p>제11조 (용자조건) ①기금의 용자에 관한 대출 한도액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.</p>	<p>제11조(용자조건) ① ----- 제8조에 따라 -----.</p>
<p>②기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2퍼센트 내지 3퍼센트 낮게 정한다.</p>	<p>② ----- ----- 2퍼센트부터 3퍼센트까지 -----.</p>
<p>③용자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③----- 3년 이내 -----. -----한 차례에 한 정하여 6개월 동안 -----.</p>
<p>④용자절차,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용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시금고간의 협약에 의한다.</p>	<p>④----- 필요한 시금고간의 -----따른다.</p>
<p>제12조 (추가용자) 시금고에서는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기금의 범위안에서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추가 용자할 수 있다.</p>	<p>제 1 2 조 (추 가 용 자) -----연도 중 ----- 기금의 범위에서 -----따라 -----.</p>
<p>제13조 (용자금상환) ① (생략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용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.</p>	<p>제13조(용자금상환) ① (현행과 같 음) ② 제1항에 따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따른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③용자를 받은 유통업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</p> <p>4. (생략)</p> <p>제14조 (기금관리공무원)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통업 업무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, 유통업업무담당과장을 기금분임 운용관으로, 유통업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.</p> <p>제15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③</p> <p>-----</p> <p>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u>따른</u></p> <p>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 4 조 (기 금 관 리 공 무 원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유</u></p> <p><u>통업업무담당을</u> -----.</p> <p>제 1 5 조 (시 행 규 칙)</p> <p>-----</p> <p><u>필요한</u>-----.</p>

<관계 법령발췌서>

○ 지방자치법

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